



제334회 임시회
2022. 1. 25.(화)

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 서

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

이 공 회 의 원

제 안 설 명 서

천안시 출신 김 연 의원입니다.

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!

이공회 의원과 조철기 위원장님 등 스물 여섯 분의
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,

『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

본 의원은 지난 4월과 6월 진행 된 도정 및 교육
행정질문에서 두 차례에 걸쳐 교육청의 소극행정을
지적했고, 이에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,

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.

또한, 장거리 출·퇴근 등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관사보유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간 교육복지 격차를 해소하고,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

다음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.

□ 다음으로, 주요 내용을 보면

안 제3조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책임성 도모를 위하여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,

위탁사무 수행에 있어 교육청 총괄관리관, 재산관리관, 해당 기초자치단체,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하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,

안 제4조제3호마목의 경우 위임사무에 있어 통학로 조성 및 승하차 구역 조성사업 추진 시 학교부지를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아울러 안 제48조의 경우 도시지역 공무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관사 보유 근거를 마련하였고,

안 제53조제4호의 경우 관사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비품지원과 관련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.

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,

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책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, 공무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

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
참조해 주시기 바라며,

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
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2022. 1. 25.

충청남도의회 의원 이 공 휘